고 발 장

고 발 인 1. 강 효 정 (청년광장 대표)
2. 김 민 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3. 이 조 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4. 임 경 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5. 임 한 결 (우리미래 대표)
6. 김 영 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7. 김 중 남 (강릉시민행동 대표)
8. 안 진 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피고발인 1. 권 성 동(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 염 동 열(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 성명불상자 다수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공기업 채용비리 자행 관계자들)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권성동, 염동열, 기타 성명불상자들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발인 1. 권성동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서 강원 강릉시 지역구에서 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발인 권성동은 이 사건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었으며, 현재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에 있습니다.

(2) 피고발인 2. 염동열 역시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역구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발인 염동열은 이 사건 당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강원랜드 소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3) 권성동, 염동열의 채용비리는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다수의 관련자들이 공동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행위들입니다. 이에 권성동, 염동열 등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가담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을 함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4) 고발인 강효정 등은 청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채용정의와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문제 및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청년단체의 각 대표(또는 대표실무자) 및 강원지역 시민단체의 대표들이고, 고발인 안진걸은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입니다.

2. 범죄 사실 및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 권성동의 범죄사실

(1) 강원랜드는 2012년과 2013년 1·2차에 걸쳐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신입사원(교육생) 공모를 통해 일반사무와 카지노·호텔 부문 518명을 채용했습니다.

(2) 그러나 함승희 대표이사가 2014. 11. 강원랜드에 취임한 이후 실시된 2015년 내부감사 결과, 합격자의 95%가 청탁 대상자로 처음부터 "별도 관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승희는 **"채용비리는 2013년 초 당시 최흥집 사장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공기업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전 양해도 받지 않은 채 교육생을 518명이나 뽑는 등 외부의 부정 청탁을 받아 저지른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3) 강원랜드 전·현직 감사실·인사팀 관계자 다수가 2012~13년 일어난 채용비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 명단'을 확보했고, 청탁 명단에 피고발인 권성동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 10명 이상이 피고발인 권성동에 의한 청탁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4)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강원랜드의 '2013년 1차 신입사원 최종합격 결과' 내부 보고문서를 입수하였습니다.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피고발인 권성동의 지역사무실에서 인턴 비서로 일하던 하씨도 2013년 강원랜드에 취업해 근무 중인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씨는 피고발인 권성동의 강릉 지역구사무실에서 인턴비서로 일하던 중인 2012. 11. 강원랜드 공채에 1차 교육생 일반사무직 부문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씨의 최종 성적은 17위 아래로 애초 채용계획선 밖에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 강원랜드는 모집공고 이후인 2012년 말까지 일반 직렬 14명, 서비스 직렬(카지노·호텔) 263명을 채용 규모로 확정해둔 상태였습니다. 내부 보고 문건에 의하면, 경쟁이 훨씬 치열한 일반 부문 경우, 10점 만점에 9점대까지 합격권이었으나, 하씨 성의 합격자 둘은 최고 8점대에 머물렀습니다.

(6) 강원랜드는 2012~13년 1·2차에 걸친 신입사원 공모에서 서류전형-직무평가-면접의 3단계를 통해 일반사무직 14명, 카지노·호텔 부문 26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팀은 서류 전형 심사부터 누군가의 지시로 직군별로 서류심사하지 않고 일반·서비스 부문을 아울러 평가하며 점수 높은 이들을 다음 평가 전형 대상자로 선발하였습니다. 학력·전공(40점)·자기소개서(60점) 평점 순위라, 일반 부문 지원자들이 크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일반 직군은 151명(수급계획의 10.7배), 서비스 쪽은 554명(계획의 2배)이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각 부문 61명, 259명이 최종합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부문은 수급계획의 4.3배가 뽑힌 반면, 서비스 쪽은 수급계획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강원랜드 대규모 공채의 핵심 사유가 '정부의 카지노 증설 허가'였다는 점에서, 일반 부문 쪽의 청탁 압력으로 인해 본래의 공채 목적마저 퇴색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7) 구체적인 선발 전형 과정을 살펴보면, 인사팀 직원들은 서류 전형에서 팀장 지시로 청탁 대상자들 점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애초 기준은 학력·전공(40점), 자기소개서(60점) 평가와 함께 폐광지역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최대 5점' 가산 우대였습니다. 막상 서류 탈락인데도 22점이 더해져 자기소개서 만점이 되고 결국 최종합격까지 된 신씨 등 1~2차 합쳐 244명이 부당하게 서류전형을 통과하였습니다.

(8) 인·적성 평가는 강원랜드가 전문업체에 맡긴 필기시험이었습니다. 1차 450명, 2차 300명만 걸러 면접을 치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흥집 강원랜드 전사장은 청탁 대상자 가운데 탈락자가 대거 나오자 “인·적성 점수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최흥집 사장의 지시하에 미자격자 185명이 구제되었습니다.

(9) 면접 심사 때에는 심사위원 간 사전 협의, 사후 추가조작으로 ‘청탁 대상자 살리기’가 이뤄졌다는 것이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입니다. 면접위원은 인사팀장과 카지노관리실장, 호텔관리실장이었습니다. 청탁 대상자의 74% 이상이 세 위원으로부터 합격권인 8점(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합격 최저선에 걸친 동점자가 대폭 양산되었고 강원랜드는 그들을 전원 채용하였습니다.

(10) 피고발인 권성동의 인턴비서로 일했던 하씨 외에도 2012~2013년 대규모 채용비리 당시 피고발인 권성동 쪽에서 10여명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정황이 강원랜드 내부 감사결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즈음 피고발인 권성동의 두 전직 비서관이 강원랜드와 이 회사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에 부정 및 특혜 채용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나. 피고발인 염동열의 범죄사실

(1) 피고발인 염동열은 2012. 3. 31.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강원 태백 황지동에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들은 선거 기간 동안 피고발인 염동일의 당선을 위해 지역 곳곳을 돌며 선거 운동을 하였고, 피고발인 염동열은 2012. 4. 11. 19대 총선에서 56.6%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2) 피고발인 염동열의 국회의원 당선을 도왔던 도의원 ㄱ씨는 2012. 11.경 피고발인 염동열의 태백 사무실로 찾아와 친조카와 지인의 딸 등 2명의 강원랜드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도의원이 청탁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일반직, 한 명은 카지노 딜러직을 지원하여 둘 다 합격했고, 한 명은 성적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피고발인 염동열의 선거를 도운 다른 군의원도 같은 시기 피고발인 염동열의 사무실을 찾아와 동서의 딸과 지역 지인 등 두 명의 명단을 당시 피고발인 염동열의 태백 지역 보좌관이었던 김00 보좌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군의원이 청탁한 두 사람 중 한명만 합격하였고, 그 합격한 이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바뀐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3) 2012년부터 2년 남짓 피고발인 염동열의 보좌관으로 일한 김00은 2012. 11. 경 서울사무실(여의도 의원회관) 지시로 지역 청탁자 명단 40명을 정리해, 강원랜드 김00전무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곧이어 김 보좌관은 서울사무실에서도 따로 접수한 청탁 명단 23명을 전달받아, 권00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또한 김OO 보좌관은 2013. 1. 11. 서울 지역 비서관인 이00 비서관과 박00 비서관에게 전자메일로, 강원랜드 신입사원 모집때 작성된 채용 청탁 명단을 전자메일로 보냈습니다. 채용 청탁 명단을 통해 지역 유력인사 33명이 피고발인 염동일에게 강원랜드 지원자 55명을 청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유력인사 33명이 사는 지역은 태백시와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등 피고발인 염동일의 지역구(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군)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청탁자 중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70%인 23명에 이르렀으며, 전현직 시군 의원도 최소 6명 포함됐습니다. 명단을 작성한 김 전 보좌관은 “주로 2012년 4·11 총선 때 염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준 이들이었다. 이들에게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받았다. 선거를 도와준 데 대한 보은용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 김 보좌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개 보좌관이 의원 지시 없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대규모 명단을 만들어 넘길 수 있겠느냐. 서울사무실 비서관을 통해 ‘의원님 지시’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6) 김 보좌관과 함께 염동열 의원의 태백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도 “서울 사무실에서 청탁 명단이 적힌 팩스가 태백 사무실로 왔다. 이메일로 하면 증거가 남는다며 순수하게 팩스로만(명단이) 오갔다. 서울에서 비서진이 직접 내려와 김 보좌관과 얘기를 나눈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 소 결

(1)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권성동과 염동열은 자신들과 친했던 사람이나,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의 부탁에 따라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하였고, 청탁대상자들은 심지어 합격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었습니다.

(2) 강원랜드 자체 조사 결과, 피고발인들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발인 권성동과 염동열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피의자로 조사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피고발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1)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

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2) 국회의원은 단독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행위들을 수행합니다.

(3)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직무범위가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제29조의2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법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예외적으

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전문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겸직과 영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국회의원의 포괄적 직무범위가 인정됨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이 소속 지역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지역주민과 소통하거는 등 지역구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하고, 휴회기간 중에도 세비를 지급합니다. 국회의원의 각종 정치행위는 종국적으로 국회의 의사결정 및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하지만 국회의원의 포괄적 직무범위 및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은 부패와 비리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회의원윤리강령>[1]과 <국회의원실천규범>을 제정하여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고유한 윤리규범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제4조는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여,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 "공공단체(강원랜드)의 처분(채용결정)에 의하여 타인(청탁대상자)을 위하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채용)을 알선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조 (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 (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

1)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직권남용금지) 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이처럼 피고발인 권성동과 염동열은 외형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집행(민원해결)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한 채용비리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강원랜드로 하여금 청탁대상자들을 채용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독자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8) 또한 피고발인 권성동과 염동열이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행위는, 강원랜드의 직원채용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4. 결 어

(1) 피고발인의 행위는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질서의 공정성을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상술한 고발 사실은 모두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해 이미 모두 확인되었으며, 이후에도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피고발인 권성동과 염동열의 범죄 의혹과 이에 대한 은폐 관련 사실들까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 위 감사결과에 따라 위 강원랜드의 채용 실무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

을 받고 있으나,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적 지위를 이용한 채용비리의 장본인 피고발인 권성동과 염동열은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상술한 바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취업청탁 행위는 공무원(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비리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의 취업청탁에 의하여 합격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서도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피해자 개인들의 아픔으로 그치지도 않습니다.

(4) 피고발인의 행위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선량하고 정직한 젊은이들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현상이 한국사회의 작동원리 그 자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발인 권성동과 염동열은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이용하여 채용 비리를 저지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많은 선량하고 힘없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5) 특히 피고발인 권성동과 염동열은 채용비리 당시 강원랜드를 감독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 피고발인 권성동의 지역구는 강릉이며, 염동열의 지역구는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강원랜드가 위치해 있다는 점, 채용비리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흥집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구 의원과 도지사 출마를 앞둔 공기업 사장의 유착관계로 인해 강원랜드에서 대규모의 채용비리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염동열 의원 등에게는 공소시효는 지났다 해도 공직선거법 상 유권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만약 피고발인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의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청년들의 한국사회 이탈 흐름이 가속화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7)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100건 넘게 적발되었다고 하고, 최근 금감원에서도 심각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권력자나 사회경제적 기득권자들에 의한 채용 비리가 이어지지도, 다시는 일어나지도 않도록 피고발인 권성동과 염동열, 그리고 공기업 채용비리를 자행한 관계자들의 범죄행위와 이를 파악하고도 묵인·은폐 또는 봐주기로 일관한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히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표고발인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이조은(010-7277-8321)이오니, 수사진행상황을 이조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01] 청년 꿈 빼앗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동아일보, 2017. 9. 13.
2. [증02] [단독] “권성동 쪽 채용청탁 10여명” 강원랜드 문건으로 확인, 한겨레신문, 2017. 9. 11.
3. [증03] [단독] 강원랜드 합격한 권성동 인턴비서, 원래는 탈락대상자였다, 한겨레신문, 2017. 9. 17.
4. [증04] [단독] 강원랜드, 검찰에 “금품수수 청탁 의혹” 직접 제기했다, 한겨레신문, 2017. 9. 17.
5. [증05] “인사비리 바로잡았더니 좋은 인재 몰려들더라”. 주간동아. 2017. 9. 20.
6. [증06] [단독] 염동열 선거 도운 유력인사들, 당선뒤 사무실서 명단 건네, 한겨레신문, 2017. 9. 14.
7. [증07] [단독] 염동열 ‘강원랜드 채용 청탁’ 55명 명단 입수, 한겨레, 2017. 9. 14.

8. [증08] [단독] 염동열 의원실, 증거 안남기려…손글씨 청탁명단 ‘팩스’로 보내, 한겨레, 2017. 9. 13.
9. [증09] “인턴부터 1급까지… ‘신의 직장’ 공기업 취업 구린내”, 서울신문, 2017. 9. 5.
10. [증10] [단독] 국무조정실,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알고도 수수방관, 한겨레, 2017. 9. 24.

첨 부 서 류

1. 입증방법 각 1부

2017. 9. 25.

위 고발인

1. 청년광장 대표 강 효 정
2.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 민 수
3.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이 조 은
4.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임 경 지
5. 우리미래 대표 임 한 결
6.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김 영 하
7. 강릉시민행동 대표 김 중 남
8.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안 진 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